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

(전병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70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
발 의 자: 전병주, 김 경, 김성준,
김인제, 박강산, 박수빈,
박승진, 박철성, 봉양순,
서준오, 성흠제, 송도호,
송재혁, 왕정순, 우형찬,
유정희, 이병도, 이소라,
이승미, 이영실, 이원형,
임규호, 임만균, 임종국,
정준호, 최기찬, 최재란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지난해 정부의 행정 전산망 오류로 인해 민원 대란이 발생하며 디지털 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및 인프라 관리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.
-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교육 정보에 대한 디지털재난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위기관리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.
- 나. 디지털재난 대응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점검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,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,
개인정보 보호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디지털재난”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·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.
 - 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
 - 나.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.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
2. “교육정보시스템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
2. 보안·안전관리 체계 구축

3.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
4.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
5.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
6.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「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 등 관련 규칙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)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)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, 조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·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정보에 대한 디지털 재난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 관련부서 문의결과 기존 재해복구시스템 및 교육부 단위 나이스 등을 통해 기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제외함

[참고] 서울시 교육청 예산서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명	2024년 예산내역		
통합재해복구시스템구축 및 운영	○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운영 (시도분담금)	=	756,571

※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

- 대상 :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
- 내용
 - 각종 재난재해 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를 통한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운영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 운영
 - 시설운영비 : 17개 시·도교육청 균등분담
 - 시스템운영비 : 17개 시·도교육청 균등 및 비례 분담, 실사용액 반영
 - 추진방법 : 한국교육학술정보원(시스템관리) 및 세종시교육청(시설관리) 위탁
 - 전년 대비 증감 사유 : 4세대 나이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규 장비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추계분석관 이홍래
☎ 02-2180-7952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